瑞山市定期市場等의開設및運營에관한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2002. 1. 19
총 무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 2001. 3. 20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2001. 3. 21

라. 上程日字 : 2001. 3. 21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地域經濟課長 南圭宗)

가. 提案理由

o '99. 2. 8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o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o 시민의 편익 및 교통, 유통환경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의 설치 및 폐지사항 규정

- 이용자의 편익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기준을 정함.
- 사용자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신고의무 사항을 정함.
- 시장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함.
- 시장의 기능유지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용자 행위제한 및 허가취소사항 규정.
- 변상금 징수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
- 시장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산정의 특례, 감면, 환급사항을 정함.
- 시장 관리의 위탁, 상인단체(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함.
- 시장소재 관할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제정조례안은 '97. 4. 10일 제정되어 '99. 2. 8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군은 조례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조항을 보완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 수정안 별첨

서산시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4조 제2항중『기간종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를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조례안 제8조중 『행위를 못한다』를『행위를 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 조례안 제9조 제1항의『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를『취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권을 설정하거나 사용권리를 양도하였을 때』를 신설하고, 『제4호』를 『시장점포와 부대시설에 시장의 승인 없이 증·개축하거나 훼손하여 원상을 변경하였을 때』 로 수정하고,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제7호』로 『제8호』를 『제2항 각호의 사항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를 신설하고,

○ 조례안 제9조 제2항에『다음 각호 1에 해당되면 시장은 시장사용을 2월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제1호 제7조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였을 때.
제2호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될 때.
제3호 시장점포를 사용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때』를 신설하고,

○ 조례안 제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수정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제1항의 변상금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1항의』를 『제2항의』로 수정하며, 『제12조 제2항의 연체금』을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체금』으로 수정하고,

○ 조례안 제 12조 제1항 제4호에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제1호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 징수한다』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 조례안 제14조 『제1항』을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호』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 100퍼센트이내』로 하고, 『제2호』를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70퍼센트내』로 하며,

○ 조례안 제15조 중 『제9호의』를 『제7호의』로 수정한다

서산시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 일에 일시사용하는 자는 허가없이 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좌 동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점포의 위치·개소 및 토지의 면적 3. 사용목적 및 특수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1~5호 좌 동
②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종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못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 할 수 없다.
1. 사용수익의 목적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권설정 또는 사용권리의 양도 3. 시장내 위험물 취급 및 시장오손 4. 시장점포와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훼손하는 등 원상 변경	1~4호 좌 동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권을 설정하거나 사용권리를 양도 하였을 때

원 안	수 정 안
3. 시장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5.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6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6.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될 때 7.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여 시장번영에 지장을 줄 때 8. 사용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때 9. 시장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할 때	3. 시장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점포와 부대시설에 시장의 승인없이 증·개축하거나 훼손하여 원상을 변경하였을 때 5.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6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6.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여 시장번영에 지장을 줄 때 7. 시장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할 때 8. 제2항 각호의 사항을 1년 이내에 2회이상 위반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면 시장은 시장사용을 2월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신설) 1. 제7조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였을 때 2.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될 때 3. 시장점포를 사용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
③제1항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또는 사용자가 중도포기 하였을 때 당해 점포에 입점할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허가 할 수있다. 다만, 신청자가 2인이상 일때에는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정안 제3항과 같음) 생 략

원 안	수 정 안
제10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①시장을 허가없이 상시사용한 경우(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제11조에 의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0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좌 동
	②제1항의 변상금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신설)
②제1항의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연체금을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 규정을준용하여 연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제11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 12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좌 동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1~3호 좌 동
2.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을 한 때에는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상시 사용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제1호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 징수한다.(신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회당 징수한다.	5. (제정안 4호와 같음) 생 략
5. 시장 사용면적은 1평당미터 이상으로 하며 1평방미터 미만의 사용면적은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6. (제정안 5호와 같음) 생 략

원 안	수 정 안
②사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좌 동
③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세조례를 준용한	③ 삭 제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서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 : 100퍼센트이내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2.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 : 70퍼센트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좌 동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일로부터 사용료를 환급한다.	**제15조(사용료의 환급)** ····· ····· 제7호 ····· ····· ····· ·····

의안번호	제 200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 . (제 회)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 3 . 20 .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0 호

제출년월일 : 2001. 2. 2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정이유

○ '99. 2. 28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민의 편익 및 교통, 유통환경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의 설치 및 폐지사항 규정 (안 제2조).

나. 이용자의 편익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기준 정함 (안 제3조).

다. 사용자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신고의무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7조).

라. 시장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사용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마. 시장의 기능유지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용자 행위제한 및 허가취소사항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

바. 변상금 징수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7조)

사. 시장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산정의 특례, 감면, 환급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5조)

아. 시장 관리의 위탁, 상인단체(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시장소재 관할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 할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 제22조).

□ 참고자료

가.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정기시장등의 개설등).

서산시 조례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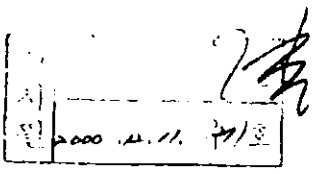

서산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가 개설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설치 및 폐지) ①시장은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통환경의 변화로 시장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이상 공고후 폐지할 수 있다.

③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간격으로 하되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 할 수 있다.

④서산시에 두는 시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장의 시설기준) ①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2,000㎡이상으로 한다.
2. 매장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점포 또는 노점으로 시설하며, 가급적 농산물분야, 의류분야, 잡화분야, 철물분야, 수산물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가. 점포 : 15㎡이상　　나. 노점 : 3.3㎡이상
3. 우수 및 오수를 효과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시장 중심부까지 소방도로를 배치하고 적정한 소방시설을 설비한다.

4. 기타 부대시설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공동 급수시설은 2개소이상 시설한다.

나. 적정한 규모의 분리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을 설치한다.

다. 주차장은 시장부지면적 150m^2당 1대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주차장 면적은 시장부지 면적에 합산되지 않아야 하며 인근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다.

라. 화장실은 남·여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로써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정화조를 설비하고, 대변기(남자 3개, 여자 5개이상), 칸막이(1칸당 85cm×115cm이상), 소변기,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수건걸이, 휴지통, 100룩스이상의 조명시설, 안내표지등의 편의시설을 갖춘다.

②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330m^2이상으로 한다.
2.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 일에 일시사용하는 자는 허가없이 시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점포의 위치·개소 및 토지의 면적
3. 사용목적 및 특수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②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기간종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사용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권리의무) ①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시사용권을 갖는다.

②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발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에 의하여 승계 받았을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휴업 하였을때
5. 사용목적을 변경 하였을때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못한다.

1. 사용수익의 목적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권설정 또는 사용권리의 양도
3. 시장내 위험물 취급 및 시장오손
4. 시장점포와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훼손하는 등 원상 변경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시장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5.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6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6.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될 때
7.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여 시장번영에 지장을 줄 때
8. 사용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때
9. 시장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할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또는 사용자가 중도포기 하였을 때 당해 점포에 입점할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허가 할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2인이상 일때에는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①시장을 허가없이 상시사용한 경우(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제11조에 의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연체금을 부과 · 징수 한다.

제11조(사용료) 시장 부지 및 시설 · 설비의 사용자는 별표 2의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부과 · 징수) ①제11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 ·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회당 징수한다.
5. 시장 사용면적은 1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며 1평방미터 미만의 사용면적은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②사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15퍼센트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세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용료 산정의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3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사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사용료 인상률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률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증가율-10퍼센트)×0.3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13퍼센트+(증가율-20퍼센트)×0.1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16퍼센트+(증가율-50퍼센트)×0.06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19퍼센트+(증가율-100퍼센트)×0.03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22퍼센트+(증가율-200퍼센트)×0.01
500퍼센트 이상	25퍼센트+(증가율-500퍼센트)×0.005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일로부터 사용료를 환급한다.

제16조(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①누구든지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자 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하거나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종료시의 설비복구) ①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사용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관리운영) ①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위탁관리 운영 계약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일정액을 월액이나 분기액 또는 반기액으로 시금고에 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상인단체의 구성)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번영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의 진흥과 발전 도모
2. 청소, 소방, 방범, 시장공공질서 및 상거래질서 확립
3. 기타 선량한 시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한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의 시장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시장관리 위탁계약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 장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

시장명	위치	면적	점포			공중화장실		
			구조	동수	건평(㎡)	구조	동수	건평(㎡)
합계		33,550		74	14,286		11	393.6
동부시장	소계	22,943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64	6,630	콘크리트	3	65.2
	동문동886-5	179	정기시일 : 매월 2, 7, 12, 17, 22, 27일					
	〃 886-10	3,051						
	〃 898-10	255						
	〃 900	19,458						
해미종합시장	소계	4,585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	3,502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	192.0
㉮동	해미면읍내리184-1	2,698						
	〃 184-4	188						
	〃 184-5	188						
	〃 184-8	129						
㉯동	〃 174-1	10						
	〃 174-2	588						
	〃 175-1	569						
	〃 175-2	215						
해미시장	소계	2,968	목조합석브럭 스레트	7	456	벽돌스라브	1	26.5
	해미면 읍내리 202	1,193	정기시일 : 5, 10, 15, 20, 25, 30일					
	〃 203	499						
	〃 204	1,276						
대산시장	소계	3,054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	3,698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	109.9
	대산읍 대산리 119	3,054						

[별표 2]

시 장 사 용 료 요 율 표

<제 1 호>

ㅇ 시장의 상시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가. 점 포	연간 ㎡당	토지 : 개별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50 건물 : 개별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50
나. 노 점	연간 ㎡당	토지 : 개별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50

<제 2 호>

ㅇ 시장의 일시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이 용 료	
		한 나 절	종 일
가. 점 포	1일 ㎡당	300	450
나. 노 점	1일 ㎡당	150	250
다. 자 동 차	대 당	1,000	2,000
라. 경운기등 농업기계	〃	500	1,000
마. 손 수 레	〃	250	500